

한국마케팅학회

마케팅학연구 제2집(1998)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경남의 경험과 동서협력 모색 -

박 완 수*

〈요약〉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 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당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겟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I.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투자유치의 필요성

1. 외국인투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라 함은 “해외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칭하며, 이중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역외국에서 당사국으로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는 Inbound Investment를 의미하며, 유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치국 입장에서는 고용 및 외국자본의 유입, 선진기술 습득, 수입대체 효과를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피투자국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형태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를 포트폴리오 투자와 구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 1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보고 있으며, 지분율이 10%이하인 경우에도 합작계약서 등에 의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입증되면 직접투자자로 정의됨.

외국인투자는 대체적으로 투자목적, 투자 및 경영주체, 투자기간 등에 따라 국내에서 기업을 직접경영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매 등과 같은 자산운용에 중점을 두는 간접 투자(portfolio investment)로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1> 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 구 분 | 직 접 투 자 | 간 접 투 자 |
|-----|---------------------|---------|
| 목 적 | 이윤추구 | 자본이득 |
| 주 체 | 개인기업 | 기관투자자 |
| 경 영 | 경영참여 | 경영참여 없음 |
| 기 간 | 원칙적으로 장기 | 단 기 |
| 대 상 | 주로 상장기업 신설, 기존기업 합병 | 상장기업 |

※ 자료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8), 「외자유치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

2. 외국인투자의 필요성

1) 외국자본의 안정적 도입

국내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회생의 기반조성.

외국인 직접투자는 추가적인 외채 부담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는 국내경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으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길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함.

2) 국가경쟁력 제고

대규모 제조업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방지.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국내산업보호와 효율적 시장지배를 위해 직접 투자유치보다 외자차입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선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쟁있는 상태로 만들어 국내기업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목적의 생산거점형인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있고 내수판매가 목적인 시장접근형인 경우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더불어 국내 경제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

3) 기술개발촉진 및 경제활성화 도모

자유시장경제의 고도화 및 기업여건변화를 통한 경제활력회복

외국인투자는 기술이전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규제에 의해 보호받던 한계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또한, 지적자본 이전으로 직접적인 기술이전 효과와 더불어 고용 인력 교육훈련, 경쟁기업의 모방을 통한 기술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저기술 산업의 구조조정 기능을 할 수 있음.

기존산업의 지식 기반화와 유망신산업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과 기존산업의 개편, 산업의 창출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4) 資産 디플레이션 발생우려 해소

IMF체제하의 금융·재정긴축으로 금융위기와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복합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자본 유치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붕괴나 기업투자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음.

5) 고용창출로 실업난 해소

대규모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난을 외국투자기업에의 유치로 해소 가능.

위축된 국내기업의 투자를 외국기업 유치나 SOC사업 유치로 상쇄 필요.

II.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및 최근의 투자동향

1.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1) 투자대상지로서 부정적 인식

그간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지속추진하여 경제·행정규제완화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은 그 동안 외국인 투자자유화 노력의 지속, 경제행정규제완화 등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의하면 97년도 한국의 경쟁력은 평가대상 46개국중 30위로 96년 27위보다 하락함.

- 말레이시아(17위), 대만(23위)에 뒤지고 있음.
- 특히 정부관리, 인프라 및 기업경영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정부정책, 금융산업, 기업문화,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지체로 “투자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알려짐.

2)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1) 노동시장

탈법적인 노사분규, 고용조정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국가부도위기가공감에 따른 노사정 합의,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80년대 후반이후 극심한 노사분규를 경

협하였으나, 최근 안정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노조에 대한 동정심의 잔존과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과격한 대형 노동쟁의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

(2) 자본시장

후진적 금융관행, 비합리적인 정부규제 및 간섭, 금융논리외적인 자원배분 (자유시장 원칙 결여).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 기업회계의 불투명성은 기업구조조정, 결합채무제표 도입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뒤떨어지고, 금융조달비용이 선진국은 물론 주변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3) 토지시장

농지, 준농지, 산업용지 등 토지이용상 많은 규제, 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 등으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활동 저해.

외국인관련 토지법개정 -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완전개방)

※ '98. 5. 25 법률 제5544호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한 국가내에서도 지역별 가격차이가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일본과 홍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토지비용이 수배이상 높음. 특히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공장부지 가격이 매우 낮음.

4) 투명성결여와 배타적 인식

외국인 투자가 기여하는 긍정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약하고, 아직도 외국자본의 국내산업 지배로 여겨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한다는 인식이 상존하며, 지방자치제 실시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집단민원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도 발생할 가능성 있음.

지방의 경우 외국인 경영자나 기술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거 환경(주택, 의료, 교육, 종교 시설 등)이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어려우며, 폐쇄적인 생활의식으로 문화적 이질성이 강해 외국인 생활에 불편 초래.

5) 비효율적인 지원체계

국내 각종정보 및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불하는 외국인 비용이 크고, 국내 투자유력업종 및 투자환경에 대한 해외홍보 부족, 일관성 없는 홍보체계 및 홍보책자도 구체적인 사항이 수록되지 못하였음.

투자 Project를 소개하면서 투자이익 회수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분석이 미비하여 주먹구구식 투자이익 회수전망.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예산확보 및 세제 감면권 제한되어 있었으며 기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처리 담당부서가 없었음.

2. 직접투자동향 분석

<표 2> 연도별 투자현황

※ ()는 투자금액, 단위:백만불 ('98. 8월말 현재)

| 연도별 | '92이전 | '93 | '94 | '95 | '96 | '97 | '98 | 누 계 |
|-----|------------------|--------------|--------------|----------------|----------------|----------------|----------------|-------------------|
| 전 국 | 2,411 (8,524) | 143 (673) | 343 (967) | 482 (1,645) | 498 (2,856) | 539 (6,154) | 372 (3,532) | 4,788 (24,351) |
| 경 남 | 123 (381) | 2 (1) | 4 (2) | 5 (14) | 13 (342) | 10 (19) | 3 (434) | 160 (1,193) |

<표 3> 업종별 투자현황(건수)

()는 경남

| 연도 업 종 | '92이전 | '93 | '94 | '95 | '96 | '97 | '98 | 누 계 |
|------------|----------------|------------|------------|------------|-------------|-------------|------------|----------------|
| 계 | 2,411 (123) | 143 (2) | 343 (4) | 482 (5) | 498 (13) | 539 (10) | 372 (3) | 4,788 (160) |
| 농·축 ·수업 | 14 | · | △2 | · | · | 5 | 2 | 19 |
| 광 업 | 15 | · | · | · | 2 | 1 | 1 | 19 |
| 제 조 업 | 1,571 (116) | △7 (2) | 93 (4) | 154 (5) | 140 (13) | 144 (7) | 122 (3) | 2,217 (150) |
| 서비스업 | 811 (7) | 150 (-) | 252 (-) | 327 (-) | 357 (-) | 389 (3) | 247 (-) | 2,533 (10) |

○ 제조업은 기계(528), 전기 및 전자(454), 화공(341) 순임.

○ 서비스업은 무역업(1,125), 도·소매업(249), 기타(2,533)

1) 추이분석

건수면에서 '92년 이전에 비하여 총 2,377건이 증가하였으며 (198% 증) 매년 평균 18%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2년 이전에는 제조업이 전체건수의 65%를 점하였으나 '93년 이후 141% (646건) 증가한 반면, 특히 서비스업분야는 '93년 이후 312%로(1722건) 급증하였음.

투자금액면에서 '92년 이전에 비하여 15,827백만불 증가(286% 증) 하였으며, 제조업 분야에서 6,981백만불 증가(229% 증) 하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8,621백만불 증가(379% 증) 하였음.

경남도의 경우 외국기업 총 160개 업체중 150개 업체가 제조업체이며 투자금액은 총 1,193백만불임.

전국대비 업체수 3.3%, 투자액 4.9%임. (시·도 투자 : 서울, 경기, 인천, 경남 순임)

Ⅲ. 정부의 정책방향과 문제점

1.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1) 추진배경

IMF로 인한 현재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확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현재 각종 금융부담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국내기업(외채 2천억 달러 추정)에게 수출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대로 지속되면 기업부도 → 내수위축 → 기업부도의 가속화 → 수출 감소 → 외채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따라서, 그 해결책은 외국인 투자·기업유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외자가 들어와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가동해야 실업자가 줄고 내수진작과 함께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인 기업에 비해 수익성 및 생산성이 양호하고 재무구조도 건실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성과가 우수할 뿐아니라, 전후방 관련산업의 생산유발,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의 면에서 국내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경쟁력있는 기술과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보유한 이들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나가야 할 것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그들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제반 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98. 4월초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8. 9. 16 외국 투자촉진법을 제정·공포하였음.

외국인 토지취득 및 적대적 M&A 전면허용 등 외국인투자 자유화조치 및 외국인투자가 지원강화책으로서 인허가 자동승인제, KOTRA를 투자유치전담기구화하고, 투자유치기금 신설, 지자체중심 투자 지역 설치 등 투자지원제도의 확충이 주내용임.

새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각종 신고수리 제도는 단순한 신고제로 전환되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의 일괄처리 가능 및 대규모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을 지원하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국유재산 무상 임대 등 각종 지원조치로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이와 더불어 지자체 부담노력과 외국인 투자의지를 평가해 보조금과 공단용지 분양가 차액의 지원, 직업 훈련비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임.

2. 투자전담체계 구축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민원 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외국 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설치되었으며, 동센터내에 외국투자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고충처리기구(옴부즈만)를 운영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외국인투자자 관련된 법인 또는 임직원이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대행할 것임.

또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

민원신청시 첨부서류의 일괄지정 및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조건부 허가), 외국인투자자 또는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투자유인제도의 대폭 보완

투자유인제도 보완책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로 변경하고 외자도 착보고절차(외자가 도입 또는 통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재경부장관에게 보고) 및 신고대리인 제도를 폐지.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종전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에 추가해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지자체가 8~15년 사이에서 지방세 감면율과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재량을 주기로 함. 또한 외국인 전용공단에 대해서도 지자체 소유의 토지와 지방산업 단지 임대료 감면 근거를 지자체 조례를 통해 마련토록하는 한편, 지자체 부담노력과 외국인투자 유치의지를 평가해 보조금과 공단 용지분양가 차액 지원, 직업훈련비 지급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임.

4. 문 제 점

1) 제조업 중심의 인센티브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의 정부의 세금감면 등 지원책은 제조업 중심임.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 자본재산업부문, 기술도입분야 등과 같은 특정분야에 인센티브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임.

지방정부가 SOC, 관광·레져단지조성 및 대형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사항이 절대미흡한 실정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SOC사업과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외자유치에도 세제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함.

2) 저가의 산업단지 부지공급과 임대부지매입비 지원미흡

우리의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용지 가격이 투자유치를 위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막대한 초기투자비용 부담해소를 위한 분양가격 인하 및 입지여건 개선이 급선무임.

<표 4> 산업단지 평균분양 가격

(’97년말 현재)

|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중 국 | 말레이시아 |
|------|-----|-----|-------|-----|-------|
| 천원/평 | 376 | 95 | 1,109 | 78 | 149 |

자료 : 산업자원부

경남의 경우 [최저분양가격 : 103,000원(거창 가조농공단지)
 최고분양가격 : 650,000원(양산 어곡지방산업 단지)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입지지원제도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부지 확보에 대한 국고지원 미흡.

외국인투자지역에 따른 산업입지 지원정책은

첫째, 기존의 수출자유지역(마산, 이리)과 국가외국인전용단지(광주평동, 천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에서도 고도기술수반사업 부문투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혜택에 불과함

둘째, 재 지자체의 공단부지 가격인하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지원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조성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이 전부임. 그러나 이의 지원방식도 MACHING FUND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함.

셋째, 지자체의 임대부지매입비용에 대한 직접지원 불가방침을 고수 하여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시책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넷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공장용지분양보다는 임대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으로 임대부지 미확보는 외국인투자유치에 큰 애로가 되고 있음.

3)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미흡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보조금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는 있으나 지원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의 매칭펀드(MACHING FUND)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한 실정임.

(4) 독자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수립했다 하더라도 이를 지원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외국인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나 현재로서는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당장 경남에서는 5년간 1000억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마련했으나 지방세수의 부족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5)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과 지방산업단지의 유·무상 대부 및 조성원가 이하 매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지자체의 현실에 부합된 실질적인 지원시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됨.

6) 중소외국인기업에 대한 지원책 부재

'96말 현재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업체수 및 규모면에서 약 90%정도가 중소기업체인 실정임.

경남의 경우 (96년 1월부터 98년 8월까지),

100만불 이하의 소규모 투자 : 전체의 50%

1000만불 이상의 대규모는 전체의 10.7%에 불과함

그러나 이러한 중소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정부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부분의 투자, 기술도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철단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함. 따라서, 국내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

7)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능력부족

과거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방식을 극복하고 국제금융, SOC 관련 민자유치사업, 기업매각, Private Equity 등의 신종 외국인 투자방식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IV. 경남의 외국인투자유치시책 방안

1. 투자유치전략

경남도에서는 지역경제회생의 유일한 대안으로 외국자본유치로 보고 민선2기 경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외국인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먼저 ① 저렴한 공장용지 분양 및 임대를 도모하고, ② 유망투자프로젝트를 개발하고, ③ 타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④ 경남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산업부문을 중점유치업종으로 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첫째,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및 서비스부분 우선유치.

둘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유통단지 설치, 종합레저시설 건설,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사업부분 지원.

셋째,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높은 투자기업 유치.

넷째,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조업부문신규 투자로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유치.

다섯째, 기업매각을 통한 투자유치분야.

여섯째, 기존투자기업의 확장·증설 지원.

일곱째,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기여도가 높은 기업유치.

2. 구체적 유치시책

1) 투자유치전담기구 설치

경남에서는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중소기업지원과에 있던 기업투자유치팀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로 격상('98. 8. 31)하여 도의 투자유치활동을 전담토록 함. 정원15명에 전문직 1명과 민간기업에서 2명을 파견받아 기존의 지방공무원으로서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삼성항공의 부장 1명과 과장 1명을 파견받아 과장과 팀장직을 부여하여 투자 유치활동에 있어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고 있음.

2)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추진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토록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후보지로서 사천시 사남면 소재 진사공업단지를 지정, '98~2000년간 1천 6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해 나갈 것이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보조하고, 지방세의 대폭감면 및 각종 행정·금융 지원 등 획기적인 우대조치를 할 것임.

진사공업단지는 총면적 2.56km로 전체부지의 개발을 거의 완료하여, 언제든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진사공업 단지내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부지비용보조에 의거 초기시설투자 등의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경쟁력있는 자금 수준, 안정적인 노사관계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게 될 것임.

진사공단은 21세기 하이테크산업단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며 전략 유치산업 및 사회간접시설은 다음과 같음.

- 전략유치산업 : 우주항공, 전기·전자, 정밀기계
- 사회간접시설 : 교통(공항, 항만, 고속도로 : 10분거리)
- 산업지원시설 : 화력발전소(삼천포, 시간당 2,000MW)
담(남강, 1일 5,500톤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공급)
배수처리장(1일 2,200톤의 배수처리)
- 산업연관효과 : 인근에 대학과 하이테크공업단지(삼평공단)가
위치하여 인재의 교류가 용이, 살기좋은 도시와
문화유산, 국립공원, 레저시설 가까이 위치

2. 도차원의 인센티브시책 마련

- 1) 경상남도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투자유치과내 설치)는 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입지지원은 물론 금융, 세제, 고용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행해주는 One-Stop-Service를 제공하여나갈 것임.

- (1) 입지지원 : 외국인투자 기업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부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이나 부지매입비를 보조.

(2) **세제 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보장.

- ① 법인세, 소득세 : 7년간 100%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면제
- ②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면제
- ③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위의 각종세금을 감면받은 기업의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특별소비세 등의 감면혜택 부여.

(3) **금융 지원** : 창업, 벤처기업, 구조조정 및 입지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도내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 사업별 한도는, R & D(3억원), 창업(8억), 벤처기업(3억), 아파트형공장 입주(2억)임.

(4) **One-stop-Service**

- ① 행정적지원 : 투자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등 관련행정기관간에 연락업무를 지원할 것임.
- ② 프로젝트지원 : 경남도에서 투자를 희망하거나 투자한 기업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사후관리 및 고충상담·처리.
- ③ 자동승인제 :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민원처리는 7~90일 기간내에 응답이 없으면 자동처리된 것으로 통보

(5) **기 타**

그 밖에도 직업훈련,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인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나갈 것임.

또한 경상남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유치기금 운용,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여 외국기업유치에 온힘을 기울여 나갈 것임.

경상남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98. 11월중 도의회 제출예정)

주요내용

- ①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자문관제 운영근거 마련
- ②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지방세의 대폭적인 감면
- ③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및 각종보조금 지원
- ④ 유치전략업종 선정 및 유치공헌자에 대한 보상제도

3. 유치활동 강화

1)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전개

(1) 합작투자, 기술투자 상담을 위한 도자체 투자유치설명회개최

(2) 경남도의 투자환경 및 투자프로젝트소개

2) 타겟기업 집중유치사업 전개

(1) 첨단기술 보유 세계유수기업에 대한 능동적인 유치전략 전개

- ①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사업
- ② 자본재산업육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보유업체
- ③ 대형프로젝트를 계획중인 대한투자관심업체

3) 유치활동방법

- (1) 도지사의 서한문 발송
- (2)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투자설명회 참가
- (3) 현지공관, KOTRA무역관을 통한 타겟국가,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 (4) 다수 외국기업이 참여는 심포지움 등 국제행사시 홍보활동강화
- (5) 국가별 민관경제협력위원회(전경련, 대한상의 주관) 개최시 경남도의 투자환경설명 및 홍보실시
- (6) 다양한 투자홍보물 제작 및 배포확대
- (7) 여러경로로 방한하는 외국인 투자고객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투자조사단등)

4) 최근 개선된 투자환경 및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홍보강화

- (1) 대외적으로는 우리경제의 고비용, 비효율구조와 최근의 파업, 대형부도 사태 등이 과장보도되어 불필요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있는 측면이 큼
- (2) 따라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등 긍정적인 요소와 지원제도, 장점과 매력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 필요

5) 적극적 유치활동 전개

정부차원의 투자유치활동 뿐만아니라 적극적, 주기적으로 지자체별로 주요 투자유치국에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경남도는 KOTRA선정 유치대상기업중 일본 50개, 미국 및 유럽등 150개 주요 유치대상 목표를 선정하고, 기 진출한 외국업체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과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활동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외국인투자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임.

외국인 투자관련 분야별(산업입지, 회사설립, 각종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등)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과 투자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임.

경남도는 외국인 투자 후보자들에게 경남의 투자여건, 지원제도, 투자절차, 입주가능 공업단지, 민자유치사업 등을 담은 홍보 책자를 영문과 일문으로 작성 비치하여두고 홍보수요에 대비하고 있음.

지역내 산업·경제정보망을 통합운영하여 동일한 정보망에서 지역별투자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하고, 사용언어도 영어외에 기타 언어(일어, 독일어등)도 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임.

인터넷 등 국제통신망에 투자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경남도의 투자환경, 투자프로젝트 그리고 인센티브 등을 담은 투자유치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

4. 사후관리 철저

도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투자유치된 외국인 기업을 잘 관리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경남도의 좋은 투자환경을 체감토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연스럽게 투자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홍보활동 방향일 것으로 사료됨.

이에 부응기 위해서는, 우리도민 모두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의 전개와 더불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시설의 꾸준한 확충, 생활환경 개선, 교육여건 조성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제2의 고향 경상남도”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임.

그리고 먼저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외국인투자협의체”의 구성

V. 경남의 투자유치활동 사례

경남에서는 Target 기업을 발굴하여 직접 찾아가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중 98년에 EU와 호주·일본 투자 유치설명회 개최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1. EU 유치활동

IMF구제금융과 관련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은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상품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아래, '98. 6. 27 ~ 7. 4 8일간 일정으로 도지사는 공무원과 기업인 등 10여명과 함께 노르웨이(오슬로), 이태리(로마), 독일(프랑크푸르트)을 방문하여, 외국자본과 기업유치활동을 하였음.

각 방문 국가에서 우리도의 투자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관련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당초 예상보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

3개 국가에서의 투자유치설명회는 현지 기업인의 연인원 380명 (노르웨이 140, 이태리 125, 독일 115)이 참석하여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경남의 투자여건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우리도에서는 이번 투자유치활동을 계기로 종합적인 외국투자 유치활동을 일본·미국 등으로 다양화시켜 외국기업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으로 다 할것임.

1) 방문활동내용

<표 5> 투자유치설명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참 석 | 내 용 |
|-------|-------------------------|-----------------|------|---|
| 노르웨이 | 6. 29(월) 09:30~16:00 | 오 슬 로 무역회관호텔 | 140명 | ○ 경남의 투자환경 연설 ○ 비디오상영 및 투자사업 판넬과 홍보물 전시 ○ 투자자 면담 및 개별기업 상담 |
| 이 태 리 | 6. 30(화) 10:00~17:00 | 로 마 상공회의소 | 125명 | |
| 독 일 | 7. 2(목) 10:00~17:00 |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 115명 | |

<표 6> 유망기업 방문상담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상담기업 | 내 용 |
|-------|-------------------------|-------|-----------|--|
| 노르웨이 | 6. 29(월) 09:30~16:00 | 오 슬 로 | SKOG, DNV | ○ 동남아 진출 전진기지로 경남에 투자희망 ○ 향후 경남도 방문 투자 환경조사 |
| 이 태 리 | 6. 30(화) 10:00~17:00 | 밀 라 노 | 삼모슬렉터 | |
| 독 일 | 7. 2(목) 10:00~17:00 | 함부르크 | H B W | |

<표 7> 투자유치실적

| 구 분 | 상 담 액 | 투자의 향서 교환 | 비 고 |
|-------|------------|------------|-----|
| 계 | 18건 814백만불 | 10건 455백만불 | |
| 노르웨이 | 7건 121백만불 | 2건 20백만불 | |
| 이 태 리 | 3건 226백만불 | 1건 8백만불 | |
| 독 일 | 8건 467백만불 | 7건 427백만불 | |

2) 성 과

(1) 경남의 투자여건 설명

합작투자 등 가시적 성과이외에도 EU 3개국에 경남의 투자 여건과 위상을 설명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2) 중앙정부(산업자원부)의 인식 전환계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해외자본 유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중앙정부

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킴.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많은 투자유치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도 인정.

(3) 현지기업인들의 반응

현지기업인들의 반응은 중앙정부(산자부)의 투자유치설명회에도 관심이 많았으나 특히 지방자치체인 경남도지사는 투자유치에 직접 참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

(4) 환경분야 선진기술도입 계기

방문기간중 이태리, 독일의 환경관련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선진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계기 만들었음.

3) 독일 FAG사와 한화기계(주)의 합작투자 성공사례

'98년 7월 3일 경남도의 EU 3국 투자유치활동에서 상당한 세계적 베어링 전문업체인 FAG사와 창원의 한화기계(주)가 2,500억원의 자본금을 공동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한화의 베어링사업을 3천억원에 인수하는 합작투자 및 양도 계약이 성사되었음.

출자비율은 FAG 70%, 한화 30% 이지만 한화측의 끈질긴 설득으로 합작회사의 운영방식을 양측 각 1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하되 FAG는 기술과 파이낸스를 관장하고 실질적 기업운영과 영업권을 한화가 관장하고 또한 기존의 인력도 그대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방식으로 금후 합작과 M&A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게 될 것임.

경남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로 한화기계(주)는 재무 구조개선(부채비율 324%에서 150%)은 물론 합작경영에 참가함으로써 임직원(2천여명)의 고용승계와 기존 영업망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베어링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 등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었음.

2. 호주·일본 투자유치설명회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외국업과 외국자본의 유치는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고, 이것이 현 난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기초를 바탕으로, '98. 9. 16 부터 9. 25까지 10일간 일정으로, 도지사를 단장으로 무학그룹 최위승 회장을 비롯한 경남도 투자유치위원과 합작투자 희망기업인 기업인 14명의 투자유치단과 함께 호주(시드니), 일본 (나고야, 교베, 도쿄)을 방문하여 해외자본과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하였음.

방문국가에서 우리 도는 현지기업인, 상공인 등을 투자자를 초청, 경남의 투자환경과 투자사업 소개, 각종 지원시책 등에 대한 투자 유치설명회와 개별상담을 통하여 257, 265천불의 투자상담 중 159, 490천불의 투자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특히 KOTRA 해외무역관이나 대사관 등 현지 조직의 협조없이 거의 불가능한 투자유치 설명을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본 아사히 신문사 등 외국인언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만큼 대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개가였으며, 지난 6월 EU 3국 투자유치에 이은 또 하나의 외자유치 업적을 쌓았다고 봄.

16 마케팅과학연구 제2집(1998)

1) 방문기간 : '98. 9. 16 ~ 9. 25(9일간)

- ┌ 호주 : '98. 9. 16 ~ 9. 19(4일간)
- └ 일본 : '98. 9. 20 ~ 9. 25(5일간)

2) 방문 단

- 단 장 :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 방문단 ┌ 투자유치단 : 무학그룹 등 9개기업 14명
- └ 시장개척단 : 34개기업 39명

3) 방문목적 : 투자유치 및 수출상담

<표 8> 주요일정

| 지역 | 일시 | 내용 |
|-----------|--|----------------------------------|
| 호주 시드니 | 9. 17(목) 13:00~18:00 | · AWT그룹 및 NSW 주정부 방문 |
| | 9. 18(금) 09:00~17:00 10:30~16:00 | · 공산품 수출상담회 · 투자유치 설명회 |
| 일본 나고야 | 9. 20(일) 16:00~17:00 | · 투자유치 개별상담 |
| 일본 고베 | 9. 21(월) 09:00~18:00 | · 공산품 수출상담회 · 고베민단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
| 일본 본경 | 9. 24(목) 10:30~16:00 16:30~21:00 | · 투자유치설명회 및 개별상담 · 농산품 수출상담회 |
| | 9. 25(금) 09:00~18:00 | · 축산연구단지 시찰 · 유망수출기업 방문 |

4) 투자유치 실적

정부합동 투자유치단 일원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도가 단독으로 추진한 투자유치 설명회는 방문국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투자환경 홍보로 기대이상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 총 상담액 : 18건 257,265천 \$
- 투자의향서 교환 : 6건 159,490천 \$

5) 해덕진주양식장과 오즈키진주(주)와 합작투자 성공사례

도지사가 이끈 호주·일본투자유치설명회의 결과로 지난 9월22일 일본 고베에서 경남통영의 해덕진주양식장과 일본의 진주양식과 가공·판매등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오즈키진주와의 합작투자 의향서를 체결하여 진주조개양식과 가공을 위한 합작회사를 통영에 설립함으로써 앞으로 기술이전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

합작회사의 총자본금은 4억원에 불과하지만 한국측 51%, 일본 49%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하고 10월중에 투자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이 성공사례는 유망중소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유치를 통하여 지방중소기업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됨.

<표 9> 투자유치 실적

| 구 분 | 상 담 실 적 | | 투자의향서 교환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합 계 | 18 | 257,265천 \$ | 6 | 159,490천 \$ |
| 호주(시드니) | 4 | 106,000 " | 1 | 80,000 " |
| 일본(나고야) | 1 | 76,336 " | 1 | 76,336 " |
| "(고베) | 6 | 44,014 " | 4 | 3,154 " |
| "(도쿄) | 7 | 30,915 " | - | - |

<표 10> 투자유치설명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참 석 | 내 용 |
|-------------|------------------------------|---------------|------|--|
| 호 주 | '98. 9. 18(금) 10:30~12:00 | 밀레니움호텔 | 120명 | · 경남의 투자환경설명 · 비디오 상영 및 파워 포인트 프리젠테이션 · 개별기업 투자상담 |
| 일 본 (고베) | '98. 9. 21(월) 13:30~18:30 | 위터힐즈 CC | 146명 | · 민단초청 투자설명회 (연설, 비디오상영) |
| 일 본 (동경) | '98. 9. 24(목) 10:00~15:30 | 그랜드팔레스 호 텔 | 125명 | · 경남의 투자환경설명 · 비디오 상영 및 파워 포인트 프리젠테이션 · 개별기업 투자상담 |

VI. 외자유치에 있어서 동서협력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로 모든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은 가열되고 있음. 특히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있음.

자치단체간 과다경쟁은 자칫 전국적 견지에서 투자유치 효과를 감할 우려가 있음. 여기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동서간 투자유치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봄.

첫째, 투자유치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망기업을 상호 소개하여 지역에 적합

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협력.

둘째, 유치관련정보와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여 투자유치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하여 공동투자유치세미나 개최도 필요할 것임.

셋째,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법에 대한 연찬을 위하여 양도의 공무원을 교환하여 상호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앞으로 공동투자유치설명회를 구성하여 양도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다섯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투자유치하는 방안이 있음.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하동·광양에 걸쳐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공동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임.

VI. 결 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의 일괄처리 및 대규모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국유재산 임대 등 각종 지원조치의 확대로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외국투자자의 눈에는 한국의 투자환경은 아직도 불안하게 비춰지고 있음. 이러한 시각을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에 앞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부유출 또는 국내 저임동력의 단순이용으로만 보는 배타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임.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로 국제기준에 맞는 경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행 우리식 정리 해고제도 관행은 외국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일부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더할 수밖에 없을 것임.

문화적 인프라 부족현상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함. 공장만 들어섰다고 투자유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사람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함.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을 분명히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게 신속적으로 제도를 정비·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시급히 보완시켜나가야 할 것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백화점식 인센티브만 늘어놓고 투자하기만을 기다리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고객입장에서 투자유치의 부진원인을 파악하고, 입체적인 전략수립과 유치노력을 경주해야 함.

외국으로 나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때 제시하는 인센티브나 프로젝트의 내용이 실질적이어서 고객인 투자자의 구미에 맞는 것이어야 함. 형식에 치우친 전시성 행사는 예산낭비만 하게 될 것임.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이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봄.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임. 우리식 기준으로 작성 된 것이 많고, 외국투자자의 시각은 향후 철저한 시장원리로 나아갈 때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큼.

“이익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함. 투자 수익률 계산이나 기업의 수

익률 및 장래성에 대한 기준이 외국에서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임. 각종 홍보물에도 이러한 구체적 수치가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임.

지방자치단체간에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도 필요하지만 경쟁가운데에서도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봄.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인센티브와 집중유치업종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소개해 주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함.

참고문헌

1. 삼성경제연구소(1998), IMF 경제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2. 한국무역협회(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8), 외국인 투자메뉴얼
4. 통상산업부(1997), 외국인 직접투자 업무안내
5. 중소기업진흥공단(1997), 외국인 투자·기술도입 추진실무
6. 대구·경북개발연구원(1998),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